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2호서식(을)](2019.03.20 개정)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(을) (자본거래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증자 및 감자

(단위 : 원)

거래상대방		구분		⑤일자	증자(또는 감자)전		증자(또는 감자)후	
①법인명	②사업자 등록번호	③증자	④감자		⑥액면총액	⑦지분	⑧액면총액	⑨지분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
2. 합병 및 분할 등

(단위 : 원)

거래상대방		구분		⑭일자	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				⑲ 합병 비율
					합병법인 등		피합병법인 등		
⑩법인명	⑪사업자 등록번호	⑫합병	⑬분할합병		⑮순자산	⑯지분	⑰순자산	⑱지분	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						%		%	1:( )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(①・②・⑩・⑪)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2.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(또는 감자)한 경우에는 구분(③・④)란의 해당란에 "○"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(⑤ ~ ⑨)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,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.

3.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(또는 분할합병)한 경우에는 구분(⑫・⑬)란의 해당란에 "○"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(⑭ ~ ⑲)에 합병등기일자(또는 분할등기일자)와 합병등기일(또는 분할등기일) 현재의 합병법인(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), 피합병법인(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)의 순자산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적습니다.

4. ⑲합병비율란의 ( )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.